

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

<제정 2018.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6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항) 원금보존기금 및 (항) 임의기금적립에 포함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금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 2022.3.1.)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교육부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기획재정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6.1., 2021.7.1.)

③ 위원회는 교원 2명이상, 직원 2명이상, 재학생 2명이상, 회계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1., 202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신설 2020.11.1.)

④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

제7조(준수사항 및 면책)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 정보 및 기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독립성) 위원회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